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44
----------	------

발의연월일 : 2017. 2. 6.

발의자 : 김병욱 · 임종성 · 정성호

윤호중 · 이찬열 · 윤후덕

전혜숙 · 안규백 · 전재수

소병훈 · 강훈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 따라서 법안의 조문 및 내용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비교육적이어선 안 될 것. 하지만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비교육적 용어이자 강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수용’이라는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이에 비교육적이며 다소 강제성을 담고 있는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의2제1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유아수용계획에”를 “유아배치계획에”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아수용계획을”을 “유아배치계획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② (생 략)</p> <p>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u>유아수용계획</u>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④ (생 략) <p>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u>유아수용계획</u>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 략) ② (생 략) 	<p>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u>유아</u> <u>배치계획</u>에 -----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p>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① ----- ----- ----- <u>유아배치계획</u>을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